[별표 3]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

□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이수점수

○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: 다음 항목 총합 20점 이상

○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: 다음 항목 총합 10점 이상

- 다 음 -

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* 이수

※ 단,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종료일로부터 2년

* 민간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매년마다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한 FTA 교육

<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>

과 목	내 용	점 수
자유무역협정(FTA)법령	· FTA 협정문 중 원산지규정 · FTA 관세특례법령 및 관련고시	시간당 2점 (최대 4점)
원산지 결정기준	·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· 결정기준 판정 연습	시간당 2점 (최대 6점)
품목분류	· 품목분류 이론 ·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	시간당 2점 (최대 6점)
인증수출자	· 인증수출자 제도 ·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	시간당 2점 (최대 6점)
원산지관리 실무	· 증명서·소명자료 작성 실무 · 업무매뉴얼 작성·사례 실무 · 전산관리 시스템 실무	시간당 2점 (최대 6점)
원산지에 관한 조사	· FTA 협정문 등 원산지조사 관련 규정 · 원산지 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	시간당 2점 (최대 6점)

② 관세, 상품학,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* 소지자: 자격증당 2점(최대 6점)

* 원산지실무사 자격증 포함,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(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이수 없이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 가능)

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*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: 건당 4점(최대 12점)

※ 컨설팅의 유효기간은 컨설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며,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컨설팅의 경우 참여 관련 공문,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수행 완료 보고서(수행 컨설턴트 확인서명 포함)를 통해 확인

* 관세사, 회계법인, 컨설팅 법인 등